

청주지방법원 2016. 8. 25 선고 2016가단384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8. 25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는 각 2/9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86. 10. 6. 접수 제457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한성

별지